

##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改替)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 2018. 11. 16 훈령 제691호  
일부개정 2021. 4. 8 훈령 제72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改替)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改替)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8>

1. “안양열병합발전소”(이하 “발전소”라 한다)는 GS파워(주)에서 운영하고 동안구 부림로 100에 위치하고 있는 발전소를 말한다.
2.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改替)사업”이란 사업시행자인 GS파워(주)가 주변 지역의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하여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노후화된 기존 발전소를 개체(改替)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改替)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GS파워(주)가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改替)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내용
  -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조치내용의 적정성
  - 나.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실태
  - 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환경기준 준수 여부
2. 위원회의 검증결과, 주변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추가적인 발생이 예상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 업무담당국장 또는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환경업무담  
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4. 8>

1. 발전소 주변 주민대표(사업장 반경 1km 이내)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발전소 주변 주민대표(사업장 반경 1km 이내)가 추천한 전문가
3. 발전소 사업시행자가 추천한 전문가
4. 공무원(발전소 환경 분야 담당 공무원)
5. 안양시의회 의원
6. 발전소 직원
7. 시민·환경단체 회원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4. 8]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  
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11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1. 4. 8 훈령 제72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